

#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8 . 31 이경진의원의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경진 의원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및 제19조의 4(정례회의 집회일등)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가.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를 7월·8월에서 9월·10월로 개정하고 “총선거”의 불명확한 자구를 입법취지에 맞게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명확하게 개정

- 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개정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 “총선거가” 있는 연도의 정례회의를 7월과 8월에서 9월 10월로 하도록 하고 불명확한 자구인 “총선거”를 “지방의회의원 총선거”로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.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붙임 :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